

보도자료2
(상세본)

이 자료는 2021년 1월 6일(수) 15:00 보도부터
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

2021. 1. 6.

기획재정부

목 차

7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(1) 간이과세 제도 개편

①	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	131
②	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	132
③	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	133
④	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	134
⑤	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	135
⑥	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 허용	136
⑦	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	137
⑧	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	138
⑨	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	139
⑩	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	140
⑪	장부 작성·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	140

(2) 신탁 세제 개편

①	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	141
②	신탁재산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	142
③	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	142
④	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	143

(3)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

(4)	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	144
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

(5)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

(6)	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	145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(7)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

(8)	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	146
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①	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	147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②	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	147
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

7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(1) 간이과세 제도 개편

①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(부가령 §109①)

< 법 개정내용(§61) >

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

- (현행)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부터 4,800만 원의 130%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
- (개정) 4,800만 원 → 8,000만 원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 기준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4,800만 원	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8,000만 원

<개정이유>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

②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(부가령 §109②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 배제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업 ○ 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(과자점업, 양복점 등)은 제외 ○ 도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은 제외 ○ 과세유홍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○ 전문자격사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변호사업, 세무사업, 건축사업, 의사업, 감정평가사업, 공인노무사업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좌 동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(좌 동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좌 동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 · 가스 · 증기 · 수도업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(예: 도배업, 인테리어 공사업 등)은 제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 · 과학 ·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 관리 ·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(예: 인물사진 · 행사용영상 촬영업 등)은 제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</p>

<개정이유> 간이과세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'

③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(부가령 §111②)

현 행		개 정 안	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율 조정	
구 분	부가 가치율	구 분	부가 가치율
1.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	5%	1. 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	15%
2. 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	10%	2. 제조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	20%
3. 제조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, 숙박업, 운수 및 통신업	20%	3. 숙박업	25%
4.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	30%	4. 건설업, 그 밖의 운수업,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	30%
		5.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)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	40%

<개정이유> 간이과세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④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(부가령 §73의2 신설)

< 법 개정내용(§36) >
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
○ (원칙) 세금계산서 발급
○ (예외) 영수증 발급
-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
-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*
*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, 여객운송업 등 ('부가령' §73①,② 업종)
▪ 다만,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등*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* 「부가령」 §73③ 업종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○ (통지)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○ (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)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

<개정이유>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

⑤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

(부가령 §70③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 →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(전자)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</p> <p>○ (작성일)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(전자)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*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</p> <p>○ (금액)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,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(또는 음의 표시)로 기재</p>

<개정이유> 수정(전자)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

⑥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(부가령 §71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* 발행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○ (공급자)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(※§73③,④) 포함 - 간이과세자 제외 ○ (신청기한)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발행 요건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'

⑦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
조정(부가령 §73조⑩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*의 범위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* 적용대상(부가령 §73) ① (제3항~제5항)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② (제8항)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하는 사업자 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과세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신 설> ○ (좌 동) ○ 간이과세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

<개정이유>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
 규정 정비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'

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(부가령 §111⑦)

< 법 개정내용(§63) >
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행) 매입세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(5%~30%) (개정)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가 과세·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<p>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</p> $\times \frac{\text{해당 과세기간의}}{\text{해당 과세기간의}} \times \frac{\text{부가}}{\text{부가가치율}}$ $\times \frac{\text{과세공급대가}}{\text{총공급대가}}$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>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</p> $\times \frac{\text{과세공급대가}}{\text{해당 과세기간의}} \times 0.5\%$

<개정이유>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과·면세 겸영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방식 정비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'

⑨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

(부가령 §86③, §112③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 <u>으로</u>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</p> <p>○ 재고매입세액(공제) - 간이과세 → 일반과세로 전환 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$\text{공제대상 매입세액} \times (1 - \frac{\text{해당업종 부가가치율}}{10})$</div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산정방식 변경</p> <p>○ (좌 동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$\text{공제대상 매입세액} \times (1 - 0.5\% \times \frac{110}{10})$</div>
<p>○ 재고납부세액(가산) - 일반과세 → 간이과세로 전환 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$\text{공제받은 매입세액} \times (1 - \frac{\text{해당업종 부가가치율}}{10})$</div>	<p>○ (좌 동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$\text{공제받은 매입세액} \times (1 - 0.5\% \times \frac{110}{10})$</div>

<개정이유>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*에 따라 재고매입·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

* (현행) 매입세액 × 부가가치율(5~30%) → (개정) 공급대가 × 0.5%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(부가령 §114③)

< 법 개정내용(§66, §67) >

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서류 추가

- (현행) 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
- (개정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의 인정사항 ○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○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○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서 항목 추가 <div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</div>

<개정이유> 세원 투명성 강화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⑪ 장부 작성·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(부가령 §117②,③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의 장부 작성·보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급가액과 세액 대신 공급 대가를 장부에 기록 가능 ○ 세금계산서·영수증 보관 시 장부기록의무 이행 간주 	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과세자 →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 및 신규 사업자 <div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/div>

<개정이유>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부
작성·보관에 관한 규정 정비

<적용시기>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신탁 세제 개편

①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(부가형 §5의2②)

< 법 개정내용(§3) >

-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납세의무자를 위탁자 →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
- (원칙) 수탁자
 - (예외) 위탁자
 -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
 -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·지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자 과세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(관리형토지신탁) * 수탁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○ 수탁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

<개정이유>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

<적용시기> '22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'

② 신탁재산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

(부가령 §5의3 신설)

< 법 개정내용(§3) >

-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
-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급 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익자 등*에게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
 - * 위탁자, 수익자, 귀속권리자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귀속재산의 가액 :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이 경우 시가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2조 기준에 따른 가격

<개정이유>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명확화

<적용시기> '22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(부가령 §8⑦)

< 법 개정내용(§8) >

-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
-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

<개정이유> 신탁재산의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 기준 명확화

<적용시기> '22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(부가령 §7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하는 매입세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화·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신 설></p> 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(수탁자)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(위탁자)의 매입세액공제 협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신탁법」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일 것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 가치세가 신고·납부된 경우

<개정이유>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2.1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'

(3)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(부가령 §13②·③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등록증 ○ 폐업신고 확인서* <p>*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첨부서류 간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삭 제></p>

<개정이유>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

(4)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(부가령 §14③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일부터 3일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호변경,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·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일 이내 → 2일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좌 동)

※ 「20년 세법개정안」 기 발표내용(20.7.22)

<개정이유>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

(5)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(부가령 §33②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·용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 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·용역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 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·용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합중국군대의 범위에 SOFA 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 추가

<개정이유> 주한미군 등에 재화·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

(6)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(부가령 §45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·자선·학술·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·용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급주체) 주무관청의 인·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, - 상증령에 따른 '공익법인등'의 사업*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·자선·학술·구호 등 공익목적 사업**을 하는 단체 <p>* 상증령 제12조 각 호 ** 부가치 제34조제1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p>○ (공급대상) 고유사업 목적상 일시적 또는 실비·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·용역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그 소속단체를 추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(좌 동)</p> <p>- 종교단체의 경우, 그 소속단체를 포함</p> <p>○ (좌 동)</p>

<개정이유>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에 그 소속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

(7)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(부가령 §91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* 적용대상</p> <p>*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, 세무서에 예정(확정) 신고시 정산·납부</p> <p>① 수출비중·수출액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중소기업)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- (중견기업) 수출비중 50% 이상 <p>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, 관세·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</p> <p>③ 최근 2년간 관세·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</p> <p>① 수출비중·수출액 요건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중소기업)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- (중견기업) 수출비중 30% 이상 <p>○ (좌 동)</p>

※ 「20년 세법개정안」 기 발표내용('20.7.22)

<개정이유> 중소·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
부터 적용

(8)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

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(부가령 §68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모든 법인사업자○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·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좌 동)○ 3억 원 → 2억 원 이상

<개정이유> 세원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22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'

※ '21년 사업장별 재화·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

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(소득령§211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○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좌 동)○ 3억 원 → 2억 원 이상

<개정이유> 세원 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22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'

※ '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